

대법원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0. 1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83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공직선거법위반(제58조의2 단서 제3호)¹⁾

-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인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당일인 2016. 4. 13.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편집자 등과 공모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칼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1)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1심 : 무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이지만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표권유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임

- 이 사건 칼럼 등록은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죄

■ 2심 : 유죄(선고유예)

-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함

- 이 사건 칼럼 등록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유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선거 당일 이 사건 칼럼을 등록하여 투표를 권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이 사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²⁾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확정)

다. 판단 근거

- 대법원 2017도6050 판결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 행한 투표권유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³⁾

2)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위 쟁점 외에도 이 사건 칼럼의 성격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리는 생략함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

- ▣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투표권유행위**
이므로 처벌대상이 됨

3. 판결의 의의

- ▣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투표권유행위를 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권유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사례
- ▣ 다만 이 사건 이후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므로(2017. 2. 28. 일부개정, 법률 제14556호),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음**

▣ 개정 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 개정 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삭제: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59조의 취지와 모순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